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1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2도6435 가.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
나. 전자금융거래법위반

피 고 인 D

상 고 인 검사

변 호 인 법무법인(유한) 정률(담당변호사 이준희, 송유진)

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노801 판결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,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1

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위반방조죄의 방조의 고의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,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_____

 대법관 박정화 _____

 대법관 노태악 _____

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